

ISSN 2093-3118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2016년 20호

70
도약의 역사
새로운 미래
KITA 70th anniversary

세계 섬유무역과 메가 FTA 영향

2016년 6월

통상연구실 제현정 연구위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CONTENTS

[요 약]	i
I. 연구 배경 및 목적	01
II. 섬유산업의 특징	02
III. 세계 섬유산업의 무역 현황	07
IV. 자유무역협정과 섬유산업	14
V. 한국에 대한 시사점	22
V. 결론	27

□ 보고서 내용 문의처

통상연구실 제 현 정 연구위원 (☎ 02-6000-5175, hjje76@kita.net)

섬유산업은 많은 국가들이 직물 또는 의류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가장 글로벌화된 산업이며, 생산자와 글로벌 바이어 간 영향력의 불균형으로 전형적인 바이어 주도의 특성을 지닌다. 또한 여러 제조업 중 가장 보호성향이 짙어 선진국은 수입 의류에 대해 여전히 9~10%대의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섬유산업 수출규모는 2014년 기준 6,393억 달러이며, 이 중 의류가 67.9%, 직물 및 편물 18.5%, 원사 8.1%, 섬유 5.6%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섬유산업의 수직적 밸류 체인은 ①미국과 주변국, ②EU와 주변국, ③미국과 아시아, ④EU와 아시아, ⑤일본과 아시아 등 크게 5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최근 타결된 TPP 및 EU-베트남 FTA의 누적조항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세계 섬유산업 공급망에 변화를 일으키고 다시 한국의 섬유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TPP와 EU-베트남 FTA는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여 보통 베트남 내에서 직물을 만드는 제직 및 편직 공정부터 시작되어 완성된 의류에 대해서만 FTA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따라서 한국산 직물을 수입하여 생산한 의류는 TPP 회원국 및 EU로 수출할 경우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EU-베트남 FTA는 매우 이례적으로 원산지 규정에 ‘한국산 직물 (fabrics originating from Korea)’에 대해 베트남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누적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즉,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의류라 하더라도 EU에 수출시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아 FTA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아직까지 베트남이 원사 및 직물 자체 공급이 부족한 생산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한국이 이 조항을 활용할 경우 베트남에 대한 섬유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의류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EU, 일본이 베트남산 의류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를 단행할 경우 베트남에 원사와 직물을 공급하는 한국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이 섬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TPP 가입과 함께 베트남이 체결한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섬유업계는 TPP 발효, 한국의 TPP 가입 추진 상황 및 EU-베트남 FTA 발효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발효 이후의 공급 및 생산지도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문

I. 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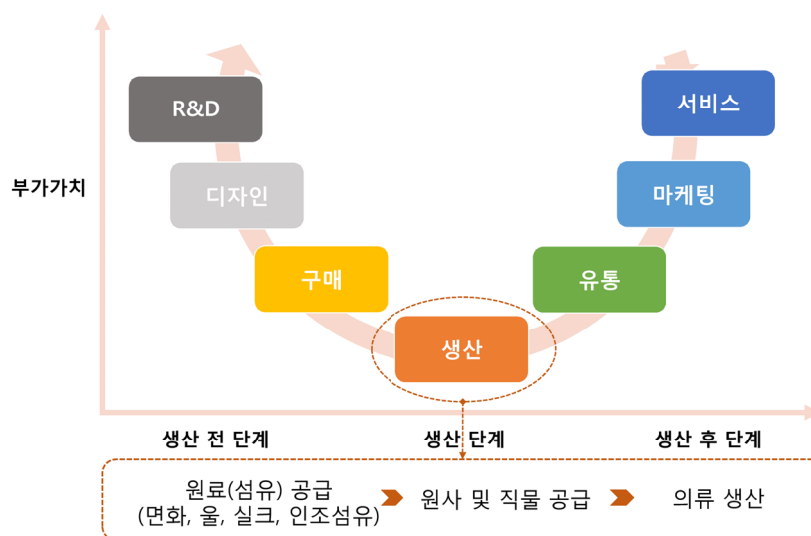
- 최근 TPP, RCEP 등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수 국가간 FTA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산업별 역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심화 및 공급·생산 지도의 변화가 예상됨
-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는 원료·중간재 공급, 생산, 소비를 담당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양자간 FTA에 비해 역내 무역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메가 FTA는 원산지 누적조항을 통해 국가간 생산 네트워크상의 개별 부가가치 및 공정을 합산하여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음
- 섬유산업의 경우, 선진국부터 신흥개도국까지 많은 국가가 관련되어 있어 메가 FTA 추진과 원산지 누적조항에 따른 공급 및 생산 지도의 변화를 쉽게 살펴볼 수 있음
- 섬유산업은 오랜 기간 수직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왔으며 최종 소비지인 선진국의 보호무역 성향이 강한 특징이 있음
 - 따라서 메가 FTA를 통해 소비국의 관세가 인하, 철폐될 경우 원산지 충족을 위한 역내 생산 네트워크 강화 유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
- 특히, TPP와 관련하여 최대 의류 소비지인 미국과 일본, 의류 생산지인 베트남이 포함되어 있어 협정 발효시 중장기적으로 베트남을 활용한 섬유산업 생산 네트워크 강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음
 - 본 보고서는 TPP 타결로 인한 섬유산업의 원산지 누적조항의 영향을 베트남의 섬유생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또한 EU-베트남 FTA 체결에 따른 한국산 직물 누적조항의 영향도 함께 고찰하고자 함

Ⅱ. 섬유산업의 특징

1. 섬유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

- 섬유산업은 가장 오래된 산업 중 하나이며 많은 국가들이 직물 또는 의류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가장 글로벌화된 산업으로 꼽힘
- 섬유산업은 신흥국들이 경제발전 초기에 저임금의 경쟁력으로 시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그동안 신흥국의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음
- 섬유산업은 ‘디자인→원자재 조달→생산→유통→마케팅’이라는 전 세계적인 수직계열화 형태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 있음
- 이러한 밸류 체인 상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은 디자인, 브랜딩, 마케팅이며, 이는 주로 빅바이어에 해당하는 미국 및 유럽의 선도기업(lead firm)이 주도하고 있음

<섬유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



자료 : Karina Fernandez-Stark, Stacey Frederick and Gary Gereffi (2011), "The Apparel Global Value Chain," Duke Center on Globalization, Governance and Competitiveness

- 신흥국들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섬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와 글로벌 바이어 또는 브랜드 기업과의 계약을 위해 상호 경쟁관계에 있음

– 1970년대 이래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섬유산업 밸류 체인 상에서 단순 가공 → OEM(포장) → ODM(디자인) → OBM(브랜드 개발)의 단계까지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어 왔음

* OEM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 :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OBM : Original Brand Manufacturing

2. 바이어 주도(Buyer-driven)의 의류산업

■ 전 세계 의류산업은 생산자와 글로벌 바이어 간 영향력의 불균형으로 전형적인 바이어 주도의 특성을 지님

- 의류산업의 빅바이어는 선진국의 대형 의류 유통업체, 브랜드 마케터, 브랜드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등으로 구분

<의류산업 바이어의 주도 기업(lead firm) 및 브랜드 유형>

기업유형	브랜드 유형	설명	예시
대형 유통기업	자체 라벨 최종 의류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 또는 라이선스 보유	자체 라벨 또는 독점 라이선스 브랜드 등을 취급하는 백화점 및 할인매장	월마트, 타겟, 시어스 등
의류 특화 유통기업		주로 매장명과 동일한 라벨 브랜드 사용	갭, H&M, 베네통 등
브랜드 마케터	브랜드, 제조자가 브랜드 소유	브랜드명 소유, '공장 없이 제조'	나이키, 폴로 등
브랜드 생산기업		브랜드명 소유 및 제조	자라 등

자료 : Gary Gereffi & Stacey Frederick (2010), The Global Apparel Value Chain, Trade and the Crisis,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글로벌 의류 바이어들은 ①원료 조달, ②물류 관리, ③전 세계 다양한 공장의 생산 관리 능력이 있는 전략적 공급업체와 계약을 통해 제품을 조달
- 패션의 주기가 점점 짧아짐에 따라 섬유산업의 주요 요소로 신속한 선적, 품질의 고급화, 유통 재고 감소 등이 강조됨

3. 통상정책과 섬유산업

■ 의류산업의 글로벌화는 시대별 통상정책에 따라 변천해왔으며, 여러 제조업 중 가장 보호성향이 짙은 산업에 해당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의류 소비지역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전히 직물 및 의류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관세를 적용
- 제조업 평균 관세율이 3.2%인 미국은 직물과 의류에 대한 관세율이 각각 7.9%, 12.0%이며, 한국도 동 품목에 대해 각각 9.0%, 12.5%의 관세를 부과

<주요 지역의 직물 및 의류에 대한 관세율 현황>

(단위 : %)

국가	미국 (2014)	EU (2014)	일본 (2015)	한국 (2015)	캐나다 (2015)	중국 (2015)
제조업 전체	3.2	4.2	2.5	6.8	2.2	8.6
섬유 및 직물	7.9	6.5	5.4	9.0	2.6	9.5
의류	12.0	11.4	9.0	12.5	16.5	16.0

주 : MFN 실행세율 단순평균
자료 : WTO

■ 과거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통해 섬유산업의 글로벌화가 촉발되었다면, 최근에는 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섬유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 강화되고 있음

- ① (보호 시기: 1974~2004) 약 30년간 미국, 유럽 국가 등 주요 의류 소비국들이 국내 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국별로 쿼터를 부과하여 수입량을 제한
- 의류 수출 강국이었던 한국, 대만, 홍콩 등이 의류 수입국이 부과한 자국 쿼터가 소진되자 의류 생산 공장을 저임금 신흥국가(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등)로 이전하면서 의류 공급 체인의 국제 분업이 촉진됨

② (개방 시기: 2005~) 섬유제품에 대한 쿼터 부과가 폐지되고 의류 바이어들이
직물 및 의류를 모든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각 국가의
섬유제품 수출입에 있어 관세 장벽이 중요해짐

●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확산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

- 미국은 1980년대부터 카리브지역 경제부흥을 위해 일방적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이후 NAFTA 및 중미 6개국*과의 DR-CAFTA를 체결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 따라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의 섬유산업이 발달하여 의류 소비자인
미국, 캐나다와 중미 지역간 섬유산업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 있음

- 한편, EU는 터키, 알제리, 이집트 등 지중해 지역 국가들과의 FTA를 유기적으로
통합시킨 유로지중해파트너십(Euro-Mediterranean Partnership)*을 통해
섬유산업 밸류 체인을 구축

* 유로지중해파트너십 참여국: EU 28개국, 덴마크령 페로 아일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튀니지, 팔레스타인
자치구

● 여러 FTA를 통해 직물 및 의류에 대한 고관세가 인하 및 철폐됨에 따라 FTA에
따른 관세 특혜를 역내에 국한시키는 한편 역내 섬유제품의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우 까다로운 특혜 원산지규정이 만들어짐

- 특히, 세계 최대 면화(cotton) 수출국이자 의류 수입국인 미국과 주변 FTA 체결
신흥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가 큰 EU를 중심으로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혜 원산지규정이 발달

③ (글로벌 밸류 체인 강화: 2017(?)~) 최근 TPP, RCEP 등 다수 국가가 참여
하는 메가 FTA가 추진되면서 특혜 원산지 누적조항(cumulation)을 활용한
역내 섬유산업 밸류 체인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섬유산업은 원료(섬유), 직물, 의류 생산지가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FTA 역내에서 국가별 원산지 재료, 부가가치, 또는 공정이 모두 누적될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TPP의 경우 최대 의류 소비국인 미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어 역내 주요 의류 수출국인 베트남의 경우 향후 섬유제품 생산지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섬유산업 관련 통상정책 변화>

1974~1994년	1995~2004년	2005~2016년	2017년(?)~
다자간 섬유협정 Multi Fibre Agreement (MFA)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TC)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메가 FTA
미국, EU, 호주,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의 직물 및 의류에 대한 국별 수입 쿼타제도 시행	1995년부터 2004년 말까지 10년간 3단계에 걸쳐 섬유무역의 자유화 시행 소비국과 인접 생산국간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섬유제품 관세 인하 및 철폐 진행 FTA를 통한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섬유제품에 대한 까다로운 특혜 원산지규정 발달		메가 FTA의 원산지누적조항을 활용한 섬유산업 밸류 체인 강화 및 생산지도 변화

자료 :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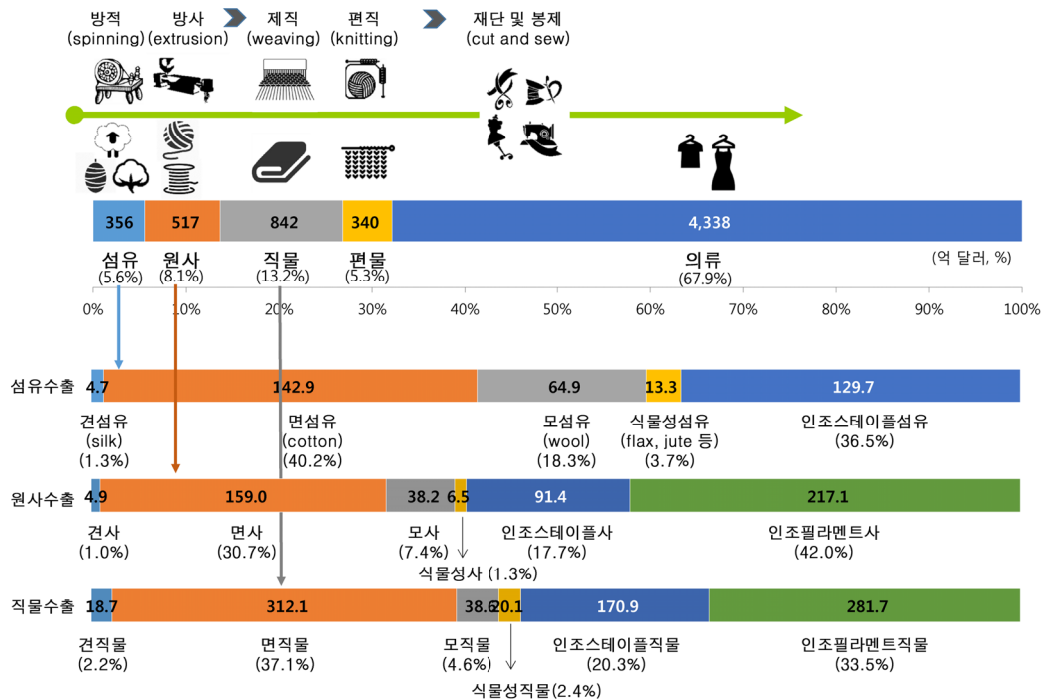
Ⅲ. 세계 섬유산업 무역 현황

1. 세계 섬유산업 수출입

(1) 품목별 개황

- 전 세계 섬유산업 수출규모는 2014년 기준 6,393억 달러이며, 이 중 의류가 67.9%, 직물 및 편물 18.5%, 원사 8.1%, 섬유 5.6%를 차지
- 의류 이전 가공단계에서는 면섬유, 면사, 면직물과 인조섬유, 인조원사 및 직물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료에 해당하는 섬유수출은 총 356억 달러(2014년)로 이 중 면섬유가 40.2%, 인조스테이플섬유가 36.5%를 차지

<섬유산업 품목별 수출 현황>



주1 : HS 2단위 기준 50~55류, 60~62류 기준, 56~59류는 제외

주2 : 통계는 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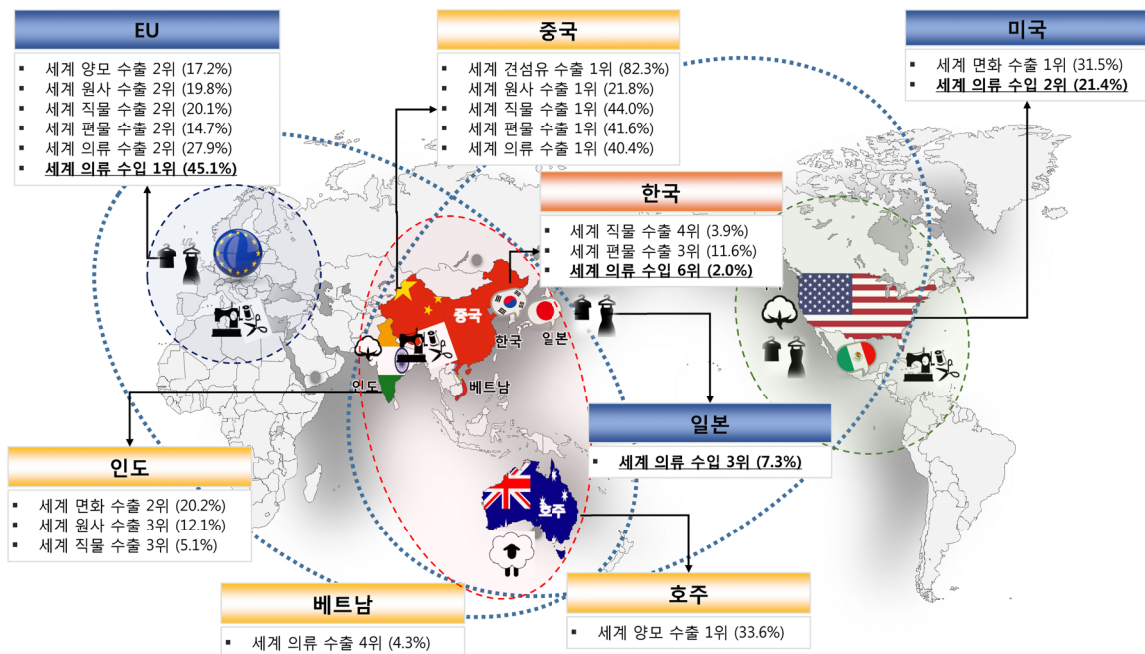
자료 : UNcomtrade 통계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원사 수출금액은 517억 달러(2014년)이며, 이 중 면사가 30.7%, 인조원사(스테이플+필라멘트)가 59.7%를 차지
- 직물의 경우 총 수출이 842억 달러(2014년)로 면직물이 37.1%, 인조직물(스테이플+필라멘트)이 53.8%를 차지

(2) 지역별 개황

- 세계적으로 섬유산업의 수직적 밸류 체인은 ① 미국과 주변국, ② EU와 주변국, ③ 미국과 아시아, ④ EU와 아시아, ⑤ 일본과 아시아 등 크게 5개 구역으로 대분
- 전 세계 의류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EU,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각각의 주변국 및 중국과의 수직적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 있음

<섬유제품 지역별 수출입 현황>



주1 : HS 2단위 기준 50~55류, 60~62류 기준, 56~59류는 제외

주2 : 통계는 2014년 기준

자료 : UNcomtrade 통계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미국은 대형 유통기업 및 의류기업들 주도로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면화 최대 수출국으로서 중미 및 아시아 국가에 면화를 수출하고 동 지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구조가 구축되어 있음
- EU도 미국과 유사하게 주변국 및 아시아 지역과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한편, EU 자체에서 하이엔드 직물, 편물 및 의류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구조임
- 일본은 상대적으로 고기술이 필요한 합성사 및 합성직물을 수출하고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
- 중국은 실크 최대 수출국이자 섬유부터 원사, 직물, 의류까지 모두 일괄 생산하면서 섬유산업 전반에 걸쳐 1위 수출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 인도는 면화 및 식물성 섬유 주요 생산국으로서 동 원료를 이용한 원사 및 직물 수출에 경쟁력 보유
- 한국은 주로 인조 섬유 기반의 직물 및 편물 수출에 경쟁력이 있으며, 의류 수입은 2005년 세계 8위(1.0%)에서 2014년 6위(2.0%)로 상승

2. 주요국의 섬유산업 수출입

(1) 의류 수입

- 전 세계 의류 수입은 EU, 미국, 일본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EU의 수입이 40% 이상, 미국이 단일국가로 20% 이상을 차지
- 지난 10여 년간 의류 수입대국의 수입 증가율은 높지 않은 반면, 한국은 2005-2014년간 연평균 증가율 12.8%, 러시아와 UAE는 각각 28.7%, 17.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한편, 세계 의류 수입 4위인 홍콩은 수입금액이 동 기간 연평균 1.5% 감소하면서 비중이 6.3%에서 3.8%로 축소

<의류 수입 상위 10개국>

(억 달러, %)

	2005년			2010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EU	1,205	44.1	EU	1,559	46.3	EU	1,806	45.1	4.6
2	미국	741	27.1	미국	756	22.5	미국	857	21.4	1.6
3	일본	212	7.7	일본	253	7.5	일본	294	7.3	3.7
4	홍콩	173	6.3	홍콩	157	4.7	홍콩	151	3.8	-1.5
5	캐나다	54	2.0	캐나다	75	2.2	캐나다	92	2.3	6.1
6	스위스	41	1.5	러시아	56	1.6	한국	80	2.0	12.8
7	호주	30	1.1	스위스	49	1.5	러시아	77	1.9	28.7
8	한국	27	1.0	호주	48	1.4	UAE	63	1.6	17.9
9	멕시코	23	0.8	한국	41	1.2	호주	60	1.5	8.0
10	싱가포르	20	0.7	터키	26	0.8	스위스	57	1.4	3.5
	합계	2,527	92.5		3,019	89.7		3,537	88.4	

주1 : 2005~2014년간 연평균 증가율

주2 : 의류는 HS코드 61류와 62류를 기준으로 함

자료 : UNcomtrade

(2) 의류 수출

- 의류 수출은 중국, EU, 베트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이 중 중국의 수출 비중은 37.5%로 상승세이며 EU는 26.2%로 하락세를 보임

<의류 수출 상위 10개국>

(억 달러, %)

	2005년			2010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EU	810	30.3	중국	1,211	34.9	중국	1,734	37.5	11.4
2	중국	659	24.6	EU	949	27.4	EU	1,211	26.2	4.6
3	홍콩	256	9.6	홍콩	229	6.6	방글라데시*	290	6.3	17.4
4	터키	115	4.3	방글라데시	148	4.3	베트남	197	4.3	17.7
5	인도	82	3.1	터키	124	3.6	홍콩	165	4.2	-3.0
6	멕시코	72	2.7	인도	106	3.1	인도	163	3.6	8.1
7	방글라데시	68	2.6	베트남	101	2.9	터키	74	3.5	4.0
8	인도네시아	49	1.8	인도네시아	65	1.9	인도네시아	74	1.6	4.6
9	베트남	46	1.7	멕시코	42	1.2	캄보디아	53	1.1	10.3
10	미국	44	1.6	미국	40	1.2	미국	53	1.1	2.1
	합계	2,200	82.3	합계	3,015	87.0	합계	4,134	89.3	

주1 : 2005~2014년간 연평균 증가율

주2 : 의류는 HS코드 61류와 62류를 기준으로 함

주3 : 2014년 방글라데시 수출실적 누락으로 국별 對방글라데시 수입으로 대체

자료 : UNcomtrade

- 2014년 기준 의류 수출 상위 10개국 중 2005-2014년간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홍콩의 수출은 감소
- 동 기간 중국의 의류 수출은 연평균 11.4%, 방글라데시는 17.4%, 베트남은 17.7%, 캄보디아는 10.3% 증가한 반면, 홍콩은 연평균 3.0% 감소

(3) 섬유, 원사 및 직물 수출

■ 섬유산업의 원료인 섬유 수출은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이, 원사, 직물 및 편물 수출은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섬유) 면화, 양모, 실크 생산지인 미국, EU, 호주, 인도의 수출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인조섬유 생산이 많은 일본과 한국도 각각 6, 8위를 차지
- (원사) 중국, EU, 인도가 수출순위 1~3위로 세계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10위를 차지
- (직물) 중국이 세계 직물 수출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EU는 20%, 한국의 수출 비중은 3.9%로 4위를 차지
- (편물) 중국이 세계 편물 수출의 42%, EU와 한국이 각각 14.7%, 11.6%로 2, 3위를 차지

<분야별 수출 상위 10개국(2014년)>

(억 달러, %)

	섬유			원사			직물(woven)			편물(knitted)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미국	62	17.4	중국	113	21.8	중국	371	44.0	중국	141	41.6
2	EU	51	14.4	EU	102	19.8	EU	169	20.1	EU	50	14.7
3	호주	40	11.2	인도	63	12.1	인도	43	5.1	한국	39	11.6
4	인도	37	10.4	미국	33	6.3	한국	33	3.9	홍콩	24	7.1
5	중국	32	9.1	홍콩	26	5.0	파키스탄	30	3.5	터키	17	5.0
6	일본	15	4.3	인니	25	4.8	터키	29	3.5	미국	11	3.1
7	브라질	15	4.3	베트남	25	4.8	일본	24	2.9	일본	6.0	1.8
8	한국	14	4.0	파키스탄	20	3.8	홍콩	24	2.8	베트남	3.3	1.0
9	태국	7.6	2.1	터키	18	3.4	USA	18	2.1	태국	3.3	1.0
10	뉴질랜드	6.3	1.8	한국	16	3.1	인니	14	1.7	인도	2.6	0.8
	합계	281	79.1	합계	439	85.0	합계	754	89.6	합계	298	87.6

주 : 품목은 HS 코드(50~55류) 4단위 기준으로 분류
자료 : UNcomtrade

3. 한국의 섬유산업 수출입 현황

- 한국의 섬유산업은 1980년대 말부터 의류 생산이 중국,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되기 시작하면서 화학섬유를 기반으로 한 직물, 편물 및 원사 위주의 섬유 중간재 수출국으로 변모
- 2014년 기준 한국의 섬유제품 수출 중 편물 수출이 32.0%, 직물 수출이 26.5%를 차지하였으며, 2004-2015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섬유와 편물로 나타남

<한국의 섬유산업 대세계 수출 추이>

(백만 달러, %)

	2005		2010		2014		2005-2014 연평균증가율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섬유	942	8.9	1,124	10.6	1,437	11.7	4.8
원사	1,396	13.2	1,557	14.6	1,620	13.2	1.7
직물	3,196	30.3	2,787	26.2	3,260	26.5	0.2
편물	2,689	25.5	3,698	34.8	3,931	32.0	4.3
의류	2,340	22.2	1,472	13.8	2,033	16.6	-1.6
총합계	10,563	100.0	10,638	100.0	12,281	100.0	1.7

주 : HS코드 50~55류, 60~62류를 기준으로 함
자료 : UNcomtrade

- 섬유, 원사, 직물 및 편물은 중국, 베트남 등 의류 생산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반면, 의류는 일본에 대한 수출이 가장 높음
- 섬유 수출은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각각 14.8%,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원사, 직물, 편물 수출은 대부분 의류 생산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선진국 중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임

<품목별 수출 상위 10개국(2014년)>

(백만 달러, %)

	섬유			원사			직물(woven)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중국	212	14.8	중국	365	16.4	베트남	669	20.5
2	미국	188	13.1	베트남	167	10.3	중국	638	19.6
3	독일	90	6.2	미국	152	9.4	미국	262	8.0
4	인도네시아	87	6.0	인도네시아	101	6.2	UAE	216	6.6
5	베트남	83	5.7	터키	95	5.9	인도네시아	210	6.5
6	일본	64	4.5	홍콩	86	5.3	홍콩	191	5.9
7	이탈리아	57	4.0	일본	79	4.9	사우디	139	4.2
8	영국	54	3.7	브라질	58	3.6	터키	73	2.2
9	폴란드	40	2.8	이탈리아	44	2.7	미얀마	57	1.8
10	이란	35	2.4	독일	36	2.2	일본	56	1.7
		909	63.3		108	66.9		2,511	77.0

주 : HS 코드(50~55류) 4단위 기준으로 분류
 자료 : UNcomtrade

<품목별 수출 상위 10개국(2014년)>

(백만 달러, %)

	편물(knitted)			의류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베트남	978	24.9	일본	421	20.7
2	인도네시아	640	16.3	중국	363	17.8
3	중국	459	11.7	베트남	359	17.7
4	미국	247	6.3	미국	268	13.2
5	필리핀	146	3.7	인도네시아	109	5.4
6	캄보디아	143	3.6	홍콩	53	2.6
7	홍콩	134	3.4	미얀마	45	2.2
8	UAE	125	3.2	캄보디아	27	1.4
9	니카라과	93	2.4	벨기에	27	1.3
10	터키	81	2.1	독일	27	1.3
		3,048	77.5		1,700	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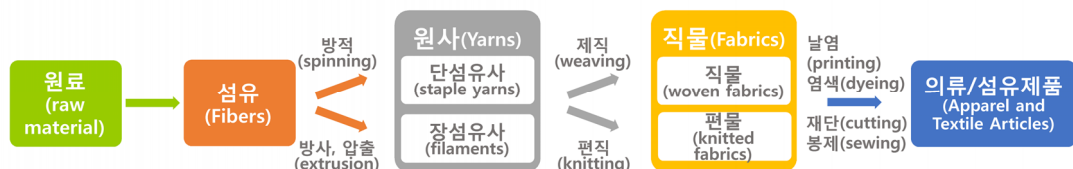
주 : HS코드 60~62류를 기준으로 함
 자료 : UNcomtrade

IV. 자유무역협정과 섬유산업

1. 자유무역협정과 섬유산업 원산지 규정

- 섬유산업은 국제 무역에서 가장 민감한 산업 중 하나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이 발달
 - EU는 섬유산업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생산과정에서 특정한 공정(방적, 압출, 편직, 재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특정공정기준”을 제시(참고 1)
 - 미국은 NAFTA부터 섬유산업에 대해서는 주로 예외규정을 동반한 세번변경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
 - 미국은 세번변경 방식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섬유제품의 HS 품목분류가 가공도에 따라 4단위 호(heading)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참고 2) 실질적으로는 공정 기준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참고 1 : 섬유산업 가공단계>



<참고 2 : 섬유제품의 가공도와 품목분류>

원료	섬유	사	직물	편물	의류	
누에고치	▶ 5001-5003	▶ 5004-5006	▶ 5007	60류	61류 편물 의류	62류 비편물 의류
모(Wool)	▶ 5101-5105	▶ 5106-5110	▶ 5111-5113			
면(Cotton)	▶ 5201-5203	▶ 5204-5207	▶ 5209-5212			
기타 식물성	▶ 5301-5305	▶ 5306-5308	▶ 5309-5311			
고분자중합체	▶	▶ 5401-5406	▶ 5407-5408			
고분자중합체	▶ 5501-5507	▶ 5508-5511	▶ 5512-5516			

주 : HS 2단위 및 4단위 기준

자료 : Trade Brief 2015, No.49, 섬유패션산업의 FTA 이해와 활용(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EU FTA 특혜 원산지 규정의 예>

HS	상품명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
ex52류	면, 다음을 제외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heading)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5204-5207 (A)	면사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spinning)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5208-5212 (B)	면직물	단사(single yarn)로부터의 생산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 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에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u>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printing) 작업.</u>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61류	의류와 그 부속품 (편물제)	<u>뜨개질(knitting)</u> (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동반하는 천연스테이플섬유 및/또는 인조스테이플섬유의 <u>방적(spinning)</u>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압출(extrusion), 또는 <u>편직(knitting)</u> 및 <u>절단(cutting)</u> 을 포함한 제조(형성을 위해 절단되었거나 형성을 위해 직접 획득한 편직 또는 크로세 직물 두 조각 이상의 조립(assembly))

주 : 관련 추가 조항은 생략
자료 : 한-EU FTA 협정문 (f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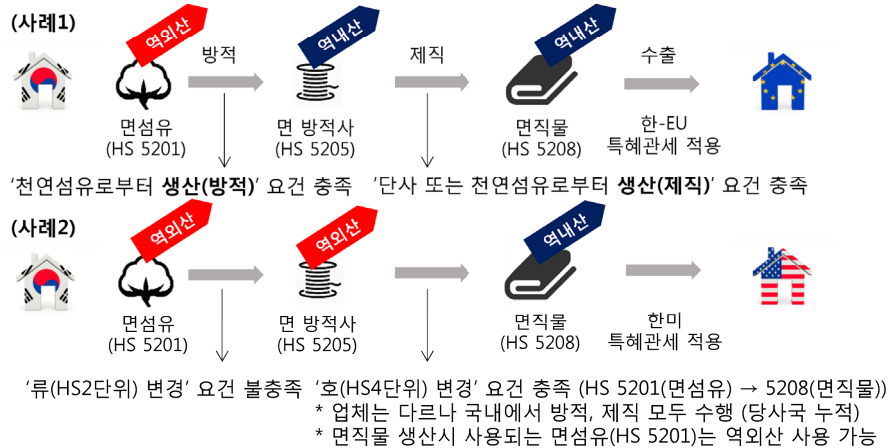
<한미 FTA 특혜 원산지 규정의 예>

HS	상품명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
5201-5207 (C)	면화 및 면사	다른 류(Chapter)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u>5201호 내지 5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u> (5401-5402, 5403.20, 5403.33, 5403.39, 5403.32-54.05 또는 5509-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208-5212 (D)	면직물	이 상품군 외의 호(Heading)에서 <u>5208-5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u> (5106-5110, 5205-5206, 5401-5402, 5403.20, 5403.33-5403.39, 5403.42-5404, 5509-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6109-6111	티셔츠, 폴오버, 스웨터 등 (편물제)	다른 류(chapter)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u>6109-6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u> (5106-5113, 5204-5212, 5307-5308, 5310-5311, 5401-5402, 5403.20, 5403.33-5403.39, 5403.42-5408 또는 5508-5516호 또는 6001-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u>재단(cut)</u>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or knit to shape)) 및 봉제(sewn) 또는 달리 결합(otherwise assembled)되어야 한다.

주 : 관련 추가 조항은 생략
자료 : 한미 FTA 협정문 (fta.go.kr)

[원산지 판정의 사례]

(상황) 한국의 제직업체 B가 인도산 면섬유를 수입하여 방직한 방직업체 A의 면방적사를 구매하여 면직물을 생산한 후 EU 및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자료 : 섬유패션산업의 FTA 이해와 활용(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례 1)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판정

- 1단계 : 면 방적사(HS 5205)의 원산지는?
 - 역외(인도)산 면화(천연섬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방직하였으므로 ‘역내산’ 요건 충족 (HS 5204-5207 원산지 규정(A) 참조)
- 2단계 : 면직물(HS 5208)의 원산지는?
 - 역외(인도)산 면화(천연섬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방직, 제직 공정을 모두 수행하였기 때문에 ‘역내산’요건 충족(HS 5208-5212 원산지 규정(B) 참조)

(사례 2)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판정

- 1단계 : 면 방적사(HS 5205)의 원산지는?
 - 역외(인도)산 면화(HS 5201)로 국내에서 방직한 면 방적사(HS 5205)가 2단위

세번변경(류(chapter)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외산’으로 판정 (HS 5201-5207 원산지 규정(C) 참조)

- 2단계 : 면직물(HS 5208)의 원산지는?
 - 역외산 면 방적사(HS 5205)를 사용하여 제조한 면직물(HS 5208)은 4단위 세번변경(호(heading)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예외 규정상 HS 5205는 역내산을 사용해야하므로 요건 불충족
 - 그러나 최종 제품인 면직물은 인도산 면섬유(HS 5201)의 방적 공정부터 국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결국 면직물(HS 5208)은 면섬유(HS 5201)로부터 4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됨. 면직물에 대한 원산지 기준상 면섬유(HS 5201)는 역외산 사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면직물은 최종 ‘역내산’으로 인정 (HS 5208-5212 원산지 규정(D) 참조)

■ EU 및 미국 주도의 FTA는 매우 까다로운 특혜 원산지 규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공단계가 높은 의류에 대한 규정이 가장 복잡하게 만들어짐

- 특히 미국은 면화 및 인조섬유 수출 대국이기 때문에 FTA 체결국간에 직물 및 의류 생산시 미국산 면 및 화학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용
 - 이러한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역외산 저가의 중간재 대신 역내(미국산) 고가의 원사 및 직물을 사용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2.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누적조항

(1) 누적조항(Cumulation)의 이해

- 2015년 10월에 타결되고 금년 2월에 서명을 완료한 TPP 협정은 원산지 누적조항을 채택하여 12개국 역내 생산 및 공급망(production & supply chain)을 통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TPP의 누적조항은 소위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의 개념과 유사하며, 이는 역내 국가간 분산되고 분화된 생산을 더욱 촉진시키기 때문에 생산의 글로벌화 및 상호 의존 구조에 적합한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TPP 원산지 누적조항에 따르면, 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및 재료(an originating good or material)’는 역내산으로 간주(considered as originating)하도록 규정
- 또한 역내에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생산공정이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충분 공정(sufficient to confer originating status)이 아니더라도 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

TPP의 누적조항(Accumulation)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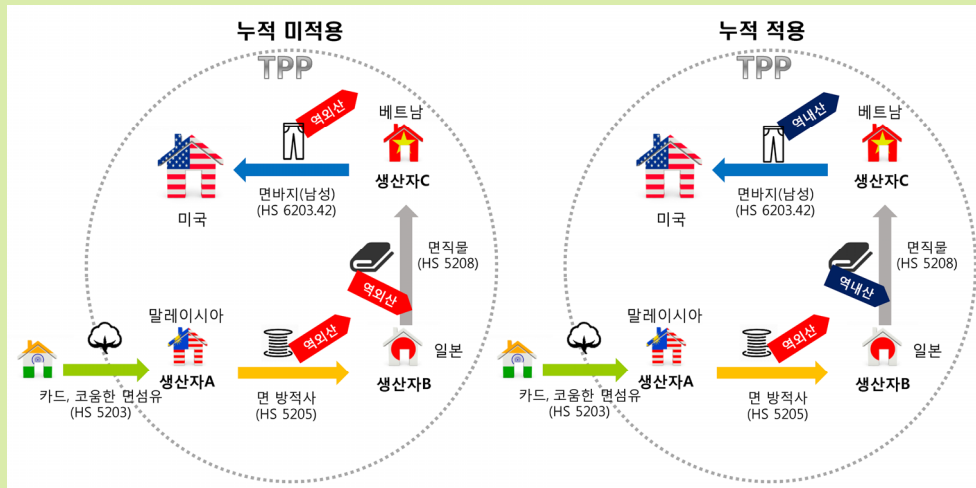
국문 (제3.10조)	영문 (Article 3.10)
1. 각 당사국은, 3.2조(원산지 상품)의 요건과 원산지 챕터의 모든 다른 적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나 이상의 당사국의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상품에 대해 원산지 자격을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어느 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느 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당사국들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해 그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하나 이상의 당사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u>비역내산 재료에 수행된 생산이 원산지 결정을 목적으로 어떤 상품의 역내산 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 생산이 그 재료 자체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데 충분한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u>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is originating if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2(Originating Goods)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 originating good or material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is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u>production undertaken on a non-originating material</u>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may contribute toward the originating content of a goo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its origin, <u>regardless of whether that production was sufficient to confer originating status</u> to the material itself.

1) 국문 협정문은 공식 번역본이 아니며 저자가 번역

(2) 섬유산업 원산지 누적(Cumulation)

TPP의 누적(Accumulation) 적용 예시2)

(상황) 말레이시아 생산자 A가 인도산 면섬유로 방직한 면사를 일본 생산자 B에게 수출하고, 생산자 B가 면사를 면직물로 제직하여 베트남 생산자 C에게 수출, 베트남 생산자 C가 동 면직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남성용 면바지를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예시1) 말레이시아 생산자 A가 생산한 면방직사(HS 5205)의 원산지

- ▶ HS 5205에 적용되는 TPP 원산지 규정: HS 2단위(류) 세번변경
- ▶ HS 5203(면섬유) → HS 5205(면방직사)는 2단위 세번변경 미충족
- ▶ 생산자 A의 면 방직사는 TPP 협정상 '역외산' 판정

예시2) 일본 생산자 B가 생산한 면직물(HS 5208)의 원산지

- ▶ HS 5208에 적용되는 TPP 원산지 규정: HS 4단위(호) 세번변경,
단, 생산에 사용된 HS 5205는 역내산이어야 함
- ▶ (누적 미활용) HS 5205(면방직사) → HS 5208(면직물)는 4단위 세번변경 충족
그러나 사용한 HS 5205(면방직사)가 역외산이라 요건 미충족
- ▶ (누적 활용) 누적을 적용할 경우 생산자 A의 생산을 생산자 B가 수행한 것처럼 간주
HS 5203(면섬유) → HS 5208(면직물)은 4단위 세번변경 충족
생산에 사용된 HS 5203(면섬유)은 역외산이어도 허용
- ▶ 생산자 B의 면직물은 TPP 협정 누적조항에 따라 '역내산' 판정

예시3) 베트남 생산자 C가 생산한 면제 남성바지(HS 6203.42)의 원산지

- ▶ HS 6203.42에 적용되는 TPP 원산지 규정: HS 2단위(류) 세번변경
단, 생산에 사용된 HS 5205/5208은 역내산이어야 함
- ▶ (누적 미활용) HS 5208(면직물) → HS 6203.42(면바지)는 2단위 세번변경 충족
그러나 사용한 HS 5208(면직물)이 역외산이라 요건 미충족
- ▶ (누적 활용) 누적을 적용할 경우 생산자 A, B의 생산을 생산자 C가 수행한 것처럼 간주
HS 5203(면섬유) → HS 6203.42(면바지)는 2단위 세번변경 충족
생산에 사용된 HS 5203(면섬유)은 역외산이어도 허용
- ▶ 생산자 C의 면바지는 TPP 협정 누적조항에 따라 '역내산' 판정

2) 동 예시는 섬유산업 관련 TPP 누적조항의 이해를 위해 단순화된 공정과 수출입 관계를 상정한 것임

3. EU-베트남 FTA 누적조항

■ EU와 베트남은 2015년 8월에 FTA를 타결하고 12월에 정식서명을 거쳐 2018년부터 발효를 목표로 함

- 세계 최대 의류 수입지인 EU와 의류 수출국인 베트남간 FTA 체결로 양 지역간 섬유산업 무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EU-베트남 FTA 발효 시 HS 61 및 62류에 대한 평균 11.4%의 관세가 최장 8년 이내에 철폐될 예정임

<EU의 베트남산 의류(HS 61 및 62류)에 대한 양허현황>

양허유형	품목수 (HS 8단위)	비중	對베트남 수입금액 (천유로, 2015년)	비중
즉시철폐	147	33.0	295,242	10.5
4단계 철폐	42	9.4	230,288	8.2
6단계 철폐	108	24.2	1,625,165	58.0
8단계 철폐	44	9.9	653,526	23.3
합계	446	100.0	2,804,221	100.0

자료 : EU-베트남 FTA 협정문, K-stat EU 통계

■ 한편, EU-베트남 FTA 원산지 규정에 한국산 직물(fabric)에 대해 베트남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누적조항이 삽입되어 있어 협정 발효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직물 수출 확대가 기대됨

- EU-베트남 FTA 원산지 규정상 베트남이 EU로 의류 수출시 베트남산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직물 제조공정부터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외산 직물 사용이 매우 제한적임
 - 베트남산 의류가 원산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①직물을 생산하는 공정(편직 또는 제직)과 ②의류를 만드는 공정(절단)을 수행해야 함
 - 그러나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는 협정문을 통해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의류 생산시 한국산 수입 직물은 역내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

EU-베트남 FTA의 한국산 직물 관련 누적조항(Cumulation of Origin)³⁾

국문 (4장 제3조)	영문 (Chapter 4 Article 3)
7. 대한민국 원산지의 직물은, 베트남에서 제6조 (불인정 공정)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수행될 경우, 부속서 5에 기재된 품목(HS 61류 및 62류)으로 추가 가공 또는 결합될 경우 베트남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8. 7항의 목적을 위하여, 원산지 품목의 정의와 행정협력의 방식에 관한 부속서 2(a)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직물의 원산지는 EU-한국 특혜 협정에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9. 7항의 목적을 위하여, 추가 작업 또는 공정에 사용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그러한 직물이 대한민국에서 EU로 직접 수출되는 것과 같은 원산지 증명을 통해 결정된다. 11. 7항을 적용하여 베트남이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the Protocol of the EU/Vietnam FTA"	7. Fabrics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Vietnam when further processed or incorporated into one of the products listed in Annex V obtained there, provided that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Vietnam which goes beyond the operations to in Article 6. 8.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7, the origin of the fabrics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rules of origin applicable in the framework of the Union's preferential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for the rules set out in Annex II(a) to the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9.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7,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fabric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Vietnam to be used in further working or processing shall be established by a proof of origin as if these fabrics were exported directly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on. 11. Proofs of origin issued by Vietnam by application of paragraph 7 shall bear the following entry: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the Protocol of the EU/Vietnam FTA".

3) 국문 협정문은 공식 번역본이 아니며 저자가 번역

V.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한국의 TPP 가입 필요

-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한국 섬유 중간재 제조 및 수출→베트남 의류 제조 및 수출→미국 등 TPP 가입국 소비’의 공급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에서 역외산인 한국산 직물 및 편물을 사용하여 의류를 생산한다면 TPP의 의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TPP 회원국에 수출시 특혜 관세 적용이 불가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TPP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베트남 내에서 섬유 중간재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TPP 원산지 규정의 누적조항이 적용되어 현재 베트남과 구축되어 있는 공급 네트워크를 통해 의류 소비대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의 TPP 가입 여부에 따른 TPP 원산지 규정 적용 예시4)



4)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원산지 규정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함

2. EU-베트남 FTA 활용

- EU-베트남 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조항이 적용될 경우 ‘한국 섬유 중간재 제조 및 수출→베트남 의류 제조 및 수출→EU내 소비’의 공급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조항이 없을 경우, 베트남에서 역외산인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의류를 생산할 경우 역내에서 직물 제직 및 의류 제조 공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EU 수출시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조항으로 인해 한국에서 수행된 직물 제직 공정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간주되어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가 EU로 수출될 경우 특혜 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
- EU-베트남 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조항은 매우 이례적인 조항이며, 직물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베트남의 의류 생산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규정으로 판단됨

EU-베트남 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조항 적용 예시5)



5)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한 예시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EU-베트남 FTA 및 한-EU FTA 원산지 규정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함

3. 베트남에 대한 섬유산업 투자 및 수출 확대 예상

■ 베트남의 섬유산업 수출에 따른 국별 부가가치는 자국을 제외하고 중국, EU, 한국, 일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EU-베트남 FTA 발효와 한국의 TPP 가입시 누적조항 활용을 통해 한국의 부가가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베트남 섬유산업 수출에 따른 국별 부가가치>

(백만 달러)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전 세계	932	2,253	5,288	8,486	7,808	8,993	10,364
베트남	601	1,202	2,660	4,330	4,457	5,302	6,480
중국	11	48	443	905	688	797	738
EU(28)	32	92	278	418	366	406	451
한국	85	255	478	636	544	466	404
일본	58	156	255	364	312	333	345
미국	12	56	99	171	152	200	225
대만	69	224	409	434	309	262	223
태국	13	30	105	160	143	170	174
사우디	3	11	41	91	55	80	117
인니	6	19	52	76	66	85	106
인도	2	9	40	83	71	106	103

주 : OECD TiVA의 산업분류상 섬유제품뿐 아니라 가죽 및 신발류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 OECD Trade in Value Added(TiVA)

■ 베트남의 섬유산업은 수입 중간재의 80% 이상이 수출에 투입되는 구조이며, TPP내 의류 수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최대 의류 수출국인 중국은 수입 중간재의 재수출 비중이 1990년대 90%대에서 축소된 반면, 베트남의 재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

<국별 섬유제품 수입 중간재의 재수출 비중>

(백만 달러)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말레이시아	49.56	56.43	57.12	62.21	66.40	69.94	66.86
멕시코	66.11	73.56	67.25	63.47	66.18	63.88	63.37
페루	14.34	17.29	23.26	24.81	23.68	22.83	24.81
베트남	50.86	69.39	78.18	82.93	83.49	86.40	87.76
중국	93.81	93.62	92.14	89.33	88.37	87.58	88.30

주 : OECD TiVA의 산업분류상 섬유제품뿐 아니라 가죽 및 신발류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 OECD Trade in Value Added(TiVA)

■ 한국이 TPP에 가입하고 EU-베트남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원사, 식물 및 편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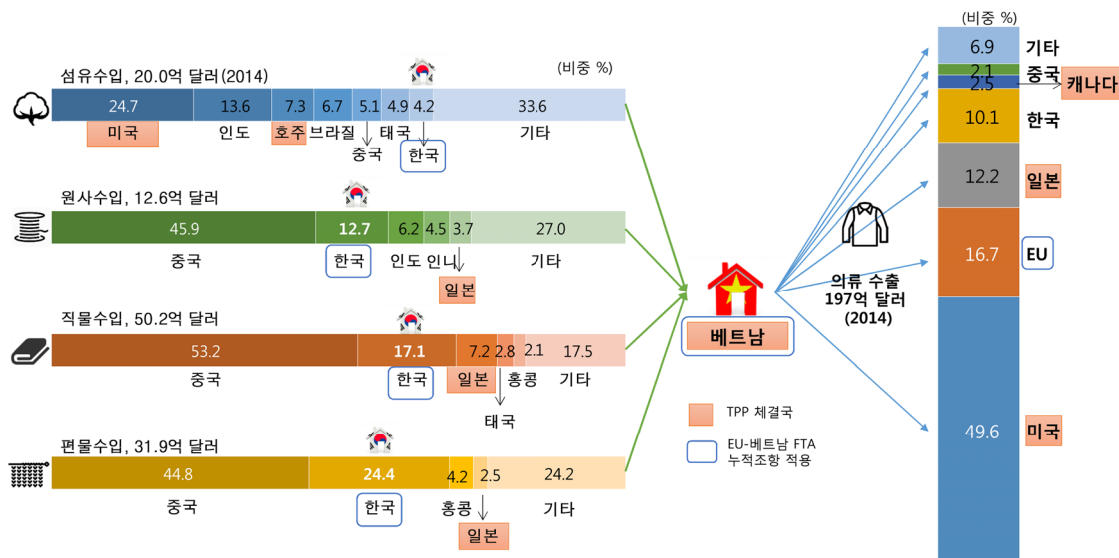
● 현재이며, 한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은 섬유를 제외하고 원사, 식물, 편물 모두 베트남의 의류 수출은 미국(49.5%), EU(16.7%), 일본(12.2%) 순 중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TPP 및 EU-베트남 FTA 특혜 원산지의 누적조항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 식물 및 편물을 사용하여 베트남에 생산된 의류는 특혜 관세를 적용 받아 TPP 회원국 및 EU로 수출이 가능하게 됨

–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현재 베트남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산 원부자재를 대체하는 효과가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베트남이 섬유산업 생산 네트워크의 핵심축으로 부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베트남내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며,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베트남의 주요국별 섬유제품 수출입 구조>



주1 : HS 2단위 기준 50~55류, 60~62류 기준, 56~59류는 제외

주2 : 통계는 2014년 기준

자료 : UNcomtrade 통계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참고] 베트남 섬유산업 현황과 TPP

- 현재 베트남 섬유산업은 자체 원사 및 직물 생산뿐 아니라 염색 및 가공 능력이 부족하여 수입 원사와 직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원사와 직물의 88% 가량이 수입되고 있으며 TP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액은 8%(10억 달러)에 불과 (2014년 기준)
 - * 베트남 섬유산업 시설 (2014년 기준): 방적기(spinner) 145대, 제직시설 (weaving facilities) 401대, 편직기(knitting mill) 105대, 염색 및 가공시설 (dyeing and finishing plants) 94대 등
 - 또한 현재 베트남산 원사의 가격은 중국산에 비해 5~10%, 직물은 5~8% 가량 높은 상황
- 따라서 TPP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TPP 역내에서 원사부터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원산지 기준(yarn-forward rule of origin)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TPP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베트남이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원사 및 직물을 베트남 또는 TPP 역내산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베트남 국내 공급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싼 베트남산을 사용할 경우 생산비용이 상승하게 됨
 - 그러나 TPP에 따른 미국의 의류 등 섬유 완성품 고관세(對베트남 수입 가중평균 18.5%)가 철폐될 경우 원사 및 직물 가격의 상승분을 상쇄시키기에 충분함
- TPP 발효에 대비하여 TPP 역외국인 중국, 홍콩, 대만, 한국 등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금액이 현재까지 1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베트남 최대 국영 섬유기업인 VINATEX도 방적 및 제직 시설에 투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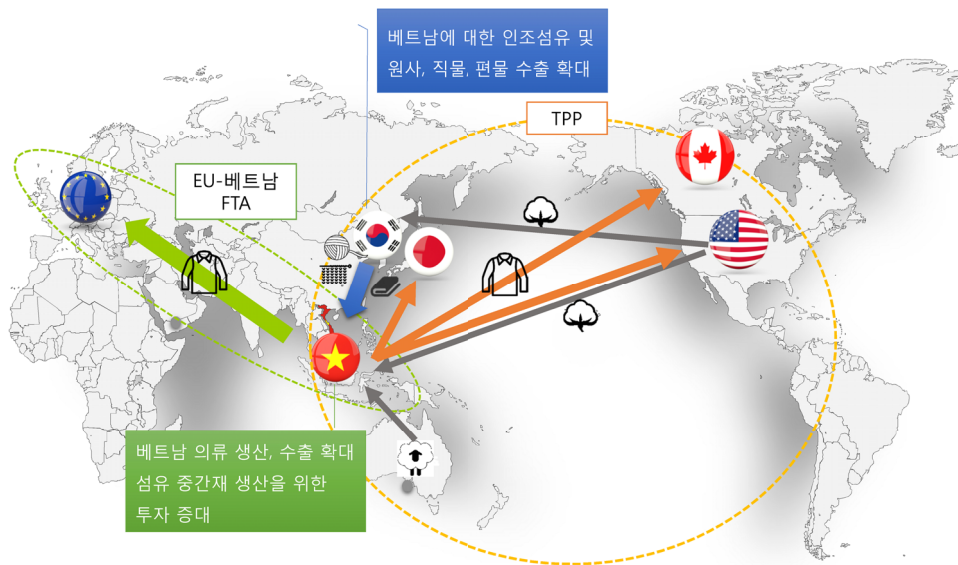
출처 : USITC, TPP Agreement: Likely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 (2016. 5월)

Ⅵ. 결론

- 섬유산업과 같이 수직적 분업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이 구축되어 있고 최종 소비자의 관세가 높은 산업은 공급 네트워크상의 국가가 모두 포함된 메가 FTA 체결에 따른 무역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TPP는 의류 소비대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생산국인 베트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협정 발효 이후 베트남을 거점으로 한 섬유산업 생산 네트워크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이는 FTA 원산지 규정의 누적조항을 활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누적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급 네트워크상의 기업들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누적조항을 활용하여 현재 ‘한국→베트남→미국 등 TPP 회원국’간 구축되어 있는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은 TPP 가입시 베트남에 대해 경쟁력이 있는 합성섬유 및 합성사, 식물 및 편물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면,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에서 한국산 식물 또는 편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의류는 TPP 회원국 수출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특혜 관세 적용이 어려움
- 한편, EU-베트남 FTA는 베트남의 섬유산업 공급 네트워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산 식물에 대해 특별히 원산지 누적조항을 삽입한 바, 협정 발효시 EU향 수출에 공급되는 식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또는 섬유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EU-베트남 FTA를 EU 시장 진출 확대의 기회로 삼고 누적조항 활용 가능성을 꼼꼼히 체크해나가야 할 것임

- 우리 섬유업계는 TPP 발효, 한국의 TPP 가입 추진 상황 및 EU-베트남 FTA 발효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발효 이후의 공급 및 생산지도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고 발효될 경우도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원산지 규정 충족을 위한 공급 전략을 수립해놓아야 할 것임

<자유무역협정과 섬유산업 공급지도>



자료 : 저자 작성

- 메가 FTA가 섬유산업 이외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산업의 특성, 국가간 공급 및 생산 네트워크, 관세율, 세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 종합적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
- 본 보고서는 메가 FTA의 누적조항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섬유산업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섬유산업의 효과를 다른 산업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음
- TPP 타결을 계기로 섬유산업 이외의 주요 산업에 대해서도 메가 FTA에 따라 예상되는 산업지도의 변화상을 예측하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참고문헌

- 박지은. (2015). “TPP가 섬유·의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Trade Brief No. 49*.
- 박지은, 제현정. (2016).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 *Trade Focus 18호*.
- 제현정, 박지은. (201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상품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Trade Brief No. 54*.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4). *섬유패션산업의 FTA 이해와 활용*.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Fernandez-Stark, Karina, Stacey Frederick and Gary Gereffi. (2011). “The Apparel Global Value Chain – Economic Upgrading and Workforce Development,” Duke Center on Globalization, Governance & Competitiveness.
- Gereffi, Gary and Olga Memedovic. (2003). “The Global Apparel Value Chain: What Prospects for Upgrading by Developing Countries.” *UNIDO Sectoral Studies Series*.
- Gereffi, Gary and Stacey Frederick. (2010). “The Global Apparel Value Chain, Trade and the Crisis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281*.
- ILO. (2014). “Wages and Working Hours in the Textiles, Clothing, Leather and Footwear Industries.” Issues Paper for Discussion at the Global Dialogue Forum on Wages and Working Hours in the Textiles, Clothing, Leather and Footwear Industries, Geneva, September 23–25.
- Inama, Stefano. (2011).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das, Hildegunn Kyvik. (2004). “The Global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Post the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WTO Discussion Paper No. 5*.

USITC. (2016). TPP Agreement: Likely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TO-IDE-JETRO-OECD. (2013). “Aid for Trade and Value Chains in Textiles and Apparel.” WTO-IDE-JETRO-OECD.

세계 섬유무역과 메가 FTA 영향

Trade Focus 2016년 20호

발행인 | 김인호

편집인 | 김극수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6년 6월 10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